

대법원 2020다247428 유류분반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민유숙)는,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(상속인)가 피고(공동상속인 아닌 수증자)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건에서,

①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,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,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'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'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, ② 유류분권리자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도,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순상속분액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'라고 판단하였음. 이와 달리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하고, ②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지만 유류분액에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하여 이를 유류분액에 가산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음[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 판결]

1. 사안의 개요

가. 사실관계

- 원고는 망인(1968년생 개업 의사)의 배우자(1997년경 혼인신고)이자 유일한 상속인이고, 피고는 2011년경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망인과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임
- 망인은 2012년 원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, 2013. 8.경 망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등으로 망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,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음
- 망인은 2013. 8.경 및 2015. 2.경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들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음
- 망인은 2017. 1.경 투신자살하였고,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생명보험계약들(이하 '이 사건 생명보험'이라 함)의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보험금 합계 약 12억 8,000만 원을 수령하였음
- 사망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, 예금 등 2억 3,000만 원과 병원 지분환급금 9억 8,400여만 원 합계 12억 1,400여만 원이 있었는데, 그 중 2억 3,000만 원은 원고가 상속받고, 지분환급금 9억 8,400여만 원은 피고가 사인증여 받게 되었음
-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(2억 3,000만 원)보다 소극적 상속재산(상속채무 5억 7,500여만 원)이 더 컸고, 원고는 상속한정 승인 신고를 하였음
- 이에 원고는, 2017. 12.경 '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(12억 8,000만 원) 또는 망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망인의 증여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한다'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
- 유류분부족액 계산방식(참고용)

$\text{유류분 부족액} = \{ \text{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(A)} \times \text{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(B)} \} - \text{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(C)} - \text{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(D)}$
--

A = 적극적 상속재산액 + 증여액(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 시점 무관하게 전부 포함, ②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까지의 증여액만 포함. 단, 피상속인과 제3자가 상속인의 유류분침해에 관한 악의인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)
- 상속채무액

B =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/2

C =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(수증 시점 무관) + 수유액

D =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- 상속채무 분담액

나. 소송의 경과

■ 제1심: 원고 청구 일부(약 3억 1,900만 원) 인용

- 사망보험금 12억 8,000만 원 또는 납입 보험료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여부: 불포함됨

-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거나 지정한 날이 피고에 대한 증여일임
- 그 증여일(보험수익자를 피고로 지정·변경한 날)이 상속개시 1년 이내가 아니므로 망인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,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지정할 당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침해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
- 결국, 사망보험금 12억 8,000만 원 또는 납입 보험료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산입할 수 없음

- 원고(상속인 겸 유류분권자)의 순상속분액이 -3억 4,400만 원인지, 0원인지: 0원임

- 원고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순상속분액은 0원으로 평가해야 함

■ 원심: 원고 청구 일부(약 12억 6,100만 원) 인용

-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여부: 포함됨
- 원고에게 유류분에 침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등 그 소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, 이러한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

판단하여, 망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됨

- 원고(상속인 겸 유류분권자)의 순상속분액이 -3억 4,400만 원인지, 0원인지: -3억 4,400만 원임
 - 원고가 상속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0원이라고 볼 수 없고,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처리해야 함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,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거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과 그 충족 여부
-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액 결정 방법

나. 판결 결과

- 일부 파기환송(피고의 상고 인용, 원고의 상고 배척)

다. 판단 내용 : 제1심 판단과 같음

-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침해(원고의 손해)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
- 망인의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증여하였을 당시 망인의 나이, 직업, 소득,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의 유류분 침해(원고의 손해)가 있을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

려움

-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,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(마이너스분)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함

3. 판결의 의의

-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,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실시하였음
-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제3자인 수증자 사이의 가해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
- 종래 대법원은 '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,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(마이너스로 계산)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'(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)라고 판시한 바 있음
- 이 판결은,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위 대법원 2017다265884 판결의 법리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,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에는, 그 채무초과분(마이너스)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실시함으로써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, 수증자(유류분반환의무자), 상속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음